

조 례 및 일 반 의 안 심 사 보 고 서



산업건설위원회

목 차

1	거창군 예비군 훈련장 차량 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2	거창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거창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안	 8
4	거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5	거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6	거창군 생활폐기물 소각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17
7	거창군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민간위탁 동의안	 21
8	거창군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25
9	거창약초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9
10	거창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33

[거창군 예비군 훈련장 차량 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23. 08. 24.

나. 발 의 자 : 신중양 의원 대표발의
(신중양, 이흥희, 박수자,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김향란, 최준규, 이재운, 신미정, 김혜숙)

다. 회부일자 : 2023. 08. 24.

라. 상정일자 : 제27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09.05.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신중양 의원)

- 예비군 훈련장에 입소하여 훈련을 받는 예비군들의 편익을 위하여 훈련 책임 부대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들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제정 목적을 정함(안 제1조)
- 조례에 사용되는 정의를 정함(안 제2조)
- 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에 대해 정함(안 제3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예비군법

나. 예산조치: 필요시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안전총괄과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3. 08. 08. ~ 08. 14.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5) 참고: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전병준)

- 본 조례안은 육군 39사단 거창 대대와 함양·산청 대대가 함양으로 통합됨에 따라 거창군 예비군대원이 훈련장으로 이동할 때 차량운행 경비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예비군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제정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6. 질의 및 답변 요지 : 회의록 참조

7. 토론요지 : 없음

8. 수정안 요지 : 없음

9. 심사결과 : 원안 가결

10.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1.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거창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23. 08. 24.

나. 발 의 자 : 김향란 의원 대표발의

(김향란, 이홍희, 박수자,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신중양, 최준규, 이재운, 신미정, 김혜숙)

다. 회부일자 : 2023. 08. 24.

라. 상정일자 : 제27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09.05.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김향란 의원)

- 급격한 기상 이변으로 인한 각종 기후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함으로써 녹색 성장을 활성화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3. 주요내용

가. 공공부문 목표관리 이행지원을 정함(안 제17조)

나. 탄소저감 청정단지 조성을 정함(안 제18조)

- 다. 녹색교통 활성화, 차 없는 날 운영, 친환경차 보급 확대 등을 정함(안 제19조~제21조)
- 라. 탄소흡수원 등 확대, 지역내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작성을 정함(안 제22조·제23조)
- 마.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 조사·평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물 관리,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를 정함(안 제24조~제26조)
- 바. 정의로운 전환 대책의 수립시행을 정함(안 제27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22조
- 나. 예산조치: 필요시
-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환경과
-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3. 08. 08. ~ 08. 14.
 - 나) 예고결과: 의견 없음
 -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5) 참고: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전병준)

- 본 개정 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지자체의 의무사항 및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 추진을 위해 2022년 12월 28일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 이번 개정 조례안을 통해 필요한 사항을 추가 규정함으로써 공공부문 목표관리 이행지원, 친환경차 보급확대,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 등 군민이 함께하는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지원사업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6. 질의 및 답변 요지 : 회의록 참조

7. 토론요지 : 없음

8. 수정안 요지 : 없음

9. 심사결과 : 원안 가결

10.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1.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거창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23. 08. 24.

나. 발 의 자 : 신중양 의원 대표발의
(신중양, 이흥희, 박수자,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김향란, 최준규, 이재운, 신미정, 김혜숙)

다. 회부일자 : 2023. 08. 24.

라. 상정일자 : 제27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09.05.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신중양 의원)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33340호, 2023. 3. 21.일부개정)에 따라 지역 실정에 맞는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차령 연장 근거규정을 마련코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을 정함(안 제1조)

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는 차령에 대해 규정함(안 제2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

나. 예산조치 : 필요 시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건설교통과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3. 08. 11. ~ 08. 16.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전병준)

- 본 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시·군의 조례로 차령을 달리 정할 수 있게 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차령 연장 근거규정을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 향상된 자동차의 내구성, 품질 등 환경변화를 고려할 때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6. 질의 및 답변 요지 : 회의록 참조

7. 토론요지 : 없음

8. 수정안 요지 : 없음

9. 심사결과 : 원안 가결

10.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1.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거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제출자 : 2023. 08. 24. / 거창군수
- 나. 회부일자 : 2023. 08. 24.
- 다. 상정일자 : 제27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09.05.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건설교통과장)

- 지속적인 경기 침체로 인하여 민간·공공분야 건설경기 동반 하락과 관내 및 도내 건설업체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지역 건설업산업체 경쟁력 강화 및 공사 참여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수급체 등 참여 권장 신설함(안 제3조의2)
- 나. 공사의 분리 발주 신설함(안 제3조의3)
- 다. 불필요한 조문 삭제함(안 제12조·제14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28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제88조,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6장
-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3. 7. 21.~8. 11.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5) 법제처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반영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전병준)

- 본 개정조례안은 건설경기 하락과 관내 및 도내 건설업체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지역건설산업체 경쟁력 강화 및 공사참여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제3조의2(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수급체 등 참여 권장)

지역 건설산업체 공동도급비율 49% 이상, 하도급 비율 70% 이상을 권장하는 것으로 지역건설업체의 참여 비율이 권장비율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세부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며 본 조문이 신설되면 지역건설산업체의 원도급 및 하도급 계약 참여가 늘고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제3조의3(공사의 분리 발주)

분리발주 적합 공종의 정립과 관리에 철저를 기한다면 분리발주로

인한 공사비의 투명성 제고, 중소기업의 수주 증대, 공사대금 직접 지급 등 중소기업 보호·육성에 기대효과가 있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6. 질의 및 답변 요지 : 회의록 참조

7. 토론요지 : 없음

8. 수정안 요지 : 없음

9. 심사결과 : 원안 가결

10.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1.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거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제출자 : 2023. 08. 24. / 거창군수
나. 회부일자 : 2023. 08. 24.
다. 상정일자 : 제27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09.05.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도시건축과장)

- 옥외광고물 표시에 관한 반복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가중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할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 사항을 반영하고
- 옥외광고물 수수료 감면 시 불필요한 절차를 생략하여 광고물 등을 표시·설치하려는 자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등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문장 정비함(안 제5조의3·제8조)
나.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계산방법을 명시함(안 별표 2)

다.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안 별표 7)

- 1) 위반행위에 대하여 가중하여 과태료 부과처분: 횡수별 차등 부과

라. 수수료 감면 시 불필요한 절차 개선함(안 제26조)

- 1)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규제부담 경감 조례 개선권고사항 반영
- 2) 수수료 감면조건이 명확한 경우에는 불필요한 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생략하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심의를 거치도록 명시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옥외광고물 및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제17조·제20조
- 2) 「옥외광고물 및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55조, 별표 5, 별표 8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전병준)

- 본 개정조례안은 안 제26조제3항에서 광고물 등에 대한 수수료 감면조건이 명확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도록 하고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수료를 면제코자 할 때에만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여 불필요한 절차를 개선 하였으며
- 별표 2에 비교를 신설하여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계산방법을 명

확히 하였음.

- 옥외광고물 표시에 관한 반복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가중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할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별표 7에서 위반 횟수와 위반 기간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6. 질의 및 답변 요지 : 회의록 참조

7. 토론요지 : 없음

8. 수정안 요지 : 없음

9. 심사결과 : 원안 가결

10.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1.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거창군 생활폐기물 소각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제출자 : 2023. 08. 24. / 거창군수

나. 회부일자 : 2023. 08. 24.

다. 상정일자 : 제27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09.05.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환경과장)

- 「거창군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대행 계약」이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됨
-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거창군 생활폐기물 소각처리시설의 원활한 운영 관리를 위하여 전문업체에게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함
- 이에 대하여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거창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위탁시설 현황

(단위 : 백만원)

시설명	위치	규모	위탁관리비	현 운영업체	비고
거창군 생활 폐기물 소각시설	거창군 거창읍 심소정길 139-7	▶ 면적 : 1,855㎡(3층, 철골) ▶ 용량 : 30톤/일 ▶ 방식 : 열분해가스화방식	1,920	(공동수급) EMC 51% 화성 49%	관리인원 18명

나. 민간위탁 내용

- 위탁사무 : 거창군 생활폐기물 소각처리시설 운영 관리 등
- 위탁기간 : 2024. 1. 1. ~ 2026. 12. 31.(3년간)
 - ※ 단, 거창군 소각시설(스토커형) 개선사업 완료 전까지
- 선정방법 : 공개모집(수탁자 선정위원회에서 선정)
- 수탁자격 : 최근 5년 이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 민간에서 발주한 20톤/일 이상의 열분해 가스화방식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을 1년 이상 운영한 실적이 있는 자
 - 수탁자의 적격성, 능력 등을 고려 선정위원회 평가

다. 소요예산 : 2,165백만원 정도 (2024년 소각시설 원가산정 용역 결과)

- 고정비 : 1,412백만원
- 변동비 : 753백만원

※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매년 원가용역을 통하여 소요예산 산정

4. 참고사항

- 관련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62조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 동의(승인)내용 : 「폐기물관리법」 제62조에 따라 전문성과 사업수행능력을 갖춘 수탁자를 공개모집(수탁자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하여 선정된 수탁자에게 거창군생활폐기물 소각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관리

○ 향후 추진일정

- 2023. 9. : 민간위탁 수행자 모집 공고 및 접수
- 2023. 10. : 민간위탁 선정위원회 구성
- 2023. 11. : 민간위탁 선정위원회 개최 및 결정
- 2023. 12. : 위·수탁협약 체결
- 2024. 1. : 위탁업무 개시

○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 생활폐기물 소각 및 침출수처리시설 운영 관리

나. 관련조문 : 제2조(설치 및 위치), 제4조(관리·운영의 위탁)

2.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백만원)

구분	1차연도 (2024년)	2차연도 (2025년)	3차연도 (2026년)	합계
군비	2,165	2,273	2,386	6,824

※ 매년 전문업체를 통하여 원가산정

3. 예산조치: 2024년도 예산 2,165백만원 확보 예정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전병준)

- 본 동의안은 거창군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대행 계약기간이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사업수행 능력을 갖춘 수탁자를 공개모집 하여 거창군 생활폐기물 소각처리시설을 민간위탁하여 운영관리코자 하는 것임.
- 「폐기물 관리법 제62조」 제3항과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의 근거에 의해 제출된 의안으로 본 동의안의 경우 관련 규정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6. 질의 및 답변 요지 : 회의록 참조

7. 토론요지 : 없음

8. 수정안 요지 : 없음

9. 심사결과 : 원안 가결

10.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1.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거창군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제출자 : 2023. 08. 24. / 거창군수
- 나. 회부일자 : 2023. 08. 24.
- 다. 상정일자 : 제27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09.05.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도시건축과장)

- 옥외광고물 안전점검과 관련한 안전점검능력(전문적인 시설, 장비, 기술인력 등)을 갖춘 법인·단체를 선정하여 옥외광고물로 인한 공중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가. 위탁대상 사무: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 나. 안전점검 대상 광고물(영 제36조)
 - 벽면이용간판
 - 돌출간판
 - 지주이용간판: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간판

- 옥상간판
-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교통시설이용 광고물·현수막 지정게시시설
- 높이가 4미터 이상인 게시시설을 이용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
- 위 광고물들의 게시시설

다. 위탁기간: 3년(2024. 3. 23. ~ 2027. 3. 22.)

라. 선정방법: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심사 선정

마. 소요예산: 없음

4. 참고사항

가. 민간위탁 추진에 따른 장점

- 전문적인 시설, 장비, 기술인력 등을 갖춘 곳을 선정하여 옥외 광고물 등의 안전한 관리로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

나. 관계법규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 「거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15조, 제16조, 제17조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5조, 제6조

다. 그간 추진현황

- 2023. 8.: 민간위탁 세부추진 계획 수립

라. 향후계획

- 2023. 9. : 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 2023. 11. ~ 12. : 위탁기관 모집 공고(공개모집)
- 2024. 1.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구성
- 2024. 2. : 수탁기관 선정 및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사
- 2024. 3. : 위탁지정서 교부 및 위탁 지정 고시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전병준)

- 본 동의안은 옥외광고물 안전점검과 관련하여 안전점검 능력을 갖춘 법인·단체를 선정하여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하기 위한 동의안으로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할 때 더욱 안전한 관리가 될 것으로 판단되며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과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의 근거에 의해 제출된 의안으로 본 동의안의 경우 관련 규정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6. 질의 및 답변 요지 : 회의록 참조

7. 토론요지 : 없음

8. 수정안 요지 : 없음

9. 심사결과 : 원안 가결

10.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1.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거창군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제출자 : 2023. 08. 24. / 거창군수

나. 회부일자 : 2023. 08. 24.

다. 상정일자 : 제272회 거창군 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09.05.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도시건축과장)

-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의 전문성과 체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육 실시 능력이 있는 법인·단체 등에게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위탁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위탁대상 사무 :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나. 교육의 종류

○ 신규교육(연간 6시간)

- 신규로 옥외광고업에 종사하려는 자
-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종업원 포함)

○ 보수교육(연간 3시간)

- 옥외광고 사업자(대표자)
-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종업원 포함)
- 행정처분 대상자(3시간) : 행정처분을 받은 옥외광고 사업자
- 다. 교육비용 : 피교육자인 옥외광고사업 종사자가 납부
- 라. 위탁기간 : 3년(2024. 3. 23. ~ 2027. 3. 22.)
- 마. 선정방법 :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심사 선정
- 바. 소요예산 : 없음
- ※ 피교육생 1인당 자비 30,000원 부담

4. 참고사항

가. 민간위탁 추진에 따른 장점

- 옥외광고업 사업자 등의 교육과 관련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를 선정하여 체계적인 교육 실시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소양 함양
- 옥외광고업(물) 관련 개정 법규 및 변화되는 여건 등에 대한 교육으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의 전문성 제고

나. 관계법규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50조
- 거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24조, 제25조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5조, 제6조

다. 그간 추진현황

- 2023. 8.: 민간위탁 세부추진 계획 수립

라. 향후계획

- 2023. 9. : 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 2023. 11. ~ 12. : 위탁기관 모집 공고(공개모집)
- 2024. 1.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구성
- 2024. 2. : 수탁기관 선정 및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사
- 2024. 3. : 위탁지정서 교부 및 위탁 지정 고시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전병준)**

- 본 동의안은 법에서 정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의 전문성과 체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업 사업자 등의 교육과 관련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에 교육을 위탁하기 위한 것으로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며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4항과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의 근거에 의해 제출된 의안으로 본 동의안의 경우 관련 규정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6. 질의 및 답변 요지 : 회의록 참조

7. 토론요지 : 없음

8. 수정안 요지 : 없음

9. 심사결과 : 원안 가결

10.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1.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거창약초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제출자 : 2023. 08. 24. / 거창군수
- 나. 회부일자 : 2023. 08. 24.
- 다. 상정일자 : 제27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09.05.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농업기술과장)

- 약초의 안정적인 생산 및 유통으로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건립한 거창약초유통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민간 위탁을 재추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시설현황
 - 시 설 명 : 거창약초유통센터
 - 위 치 : 거창읍 대평리 거함대로 3372
 - 시설현황 : 부지 3,444㎡, 시설 1,243㎡
 - － 세부시설 : 판매장 118㎡, 집하장 및 창고 900㎡, 전처리시설 225㎡

나. 위탁사무

- 시설 유지관리 : 약초유통센터 토지·건물과 기계 장비 유지관리
- 운영 관리 : 약초의 집하, 보관, 선별, 전처리, 소분, 저장, 판매 등

다. 그간 추진사항

- 2015년도 : 거함산 향노화 약용식물 상품화 지원사업 공모 선정
- 2016년도 : 기본·실시설계 용역 계약 및 준공, 공사 계약
- 2017년도 : 거창약초유통센터 착공 및 준공
- 2018. 7. : 거창약초유통센터 민간위탁 군의회 동의
- 2018. 11.~12. : 입찰공고 3회 / 단독응모로 유찰
- 2021. 1. 1. ~ 2023. 12. 31. : 거창약초유통센터 민간위탁 운영
- 2023. 8. : 거창약초유통센터 재위탁 계획 수립

라. 운영계획

- 수탁자
 - 집하장 및 전처리장 : 거창군약초산업협동조합(대표:박성근)
 - 약초판매장 : 거창농특산물협동조합(대표:이장호)
- 위탁기간 : 2024. 1. ~ 2026. 12.(3년간)
- 위탁범위
 - 시설 유지관리 : 약초유통센터 토지·건물과 기계 장비 유지관리
 - 운영 관리 : 약초의 집하, 보관, 선별, 전처리, 소분, 저장, 판매 등
 - 집하장·전처리장과 판매장 분리 위탁

마. 소요예산 : 위탁금 없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5조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17조, 제18조
- 「거창군 향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

나. 향후계획

- 2023. 9월 : 민간위탁운영 군의회 동의
- 2023. 9월 : 재위탁 적정성 심의(민간위탁심의위원회)
- 2023. 11월 : 협상 및 협약 체결, 고시
- 2024. 1월 : 수탁자(단체) 위탁운영실시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전병준)

- 본 동의안은 거창약초유통센터의 위탁기간이 2023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같은 수탁기관에 재계약하기 위한 것으로 민간위탁 사무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의 적정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평가에 공정성을 기해야 할 것임.
- 재계약을 하게 된다면 수탁기관의 전문성과 현장경험을 활용하고, 사업의 연속성 및 안정적 운영으로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거창군 향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와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의 근거에 의해 제출된 의안으로 본 동의안의 경우 관련 규정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6. 질의 및 답변 요지 : 회의록 참조

7. 토론요지 : 없음

8. 수정안 요지 : 없음

9. 심사결과 : 원안 가결

10.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1.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거창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제출자 : 2023. 08. 24. / 거창군수
- 나. 회부일자 : 2023. 08. 24.
- 다. 상정일자 : 제27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09.05.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행복농촌과장)

- 거창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의 사업기간을 1년 연장함에 따라 민간위탁 또한 재위탁하고자 하고자 함.
- 이에 대하여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거창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사업명 : 거창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 나. 사업비 : 7,000백만원
- 다. 주요사업
 - (H/W) 신활력 공유센터 조성/거창읍 대평리 1335-4번지 일원
(10,567m²)

○ (S/W) 신활력 아카데미, 월간거창농부, 주민창안 공모사업 등
라. 사업기간 변경 : 경남도, 농식품부 협의 및 승인 추진

○ 당초 : 2020년 ~ 2023년 / 4년간

○ 변경 : 2020년 ~ 2024년 / 5년간 (1년 연장)

마. 민간위탁 재위탁

○ 당 초 : 2021. 5. 1. ~ 2023. 12. 31.

○ 재위탁 : 2024. 1. 1. ~ 2024. 12. 31.

바. 위탁현황

○ 위탁사업명 :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S/W사업)

○ 위탁기관명 : 활력거창네트워크

○ 위 탁 기 간 : 2021. 5. 1. ~ 2023. 12. 31.

○ 위탁사무 : 추진단 사무국 운영 및 S/W사업(21억원) 추진

사 업 명		사 업 내 용	비 고
신활력 아카데미	기초아카데미	신활력 사업에 대한 주민 설명회	
	주민창안학교	(농업·농촌)창업 기초교육	
	푸른농부100	영농창업 청년 교육(이론 및 실습)	
	농촌관광 인력교육	체험지도사 등 역량강화 교육	
	공유부엌 매니저 양성	공유부엌 매니저로 육성	
월간거창농부		지역 농산물 등 소개판매	
주민창안 공모사업		주민 창안 사업 공모 및 선정·사업화	
특화가공상품 개발		지역 농산물 활용 상품화 추진	
거창 로컬푸드 육성		로컬푸드 생태계 구축 및 기반 확대	
공유부엌		건강한 식문화 형성 및 관련 콘텐츠 개발	
공유텃밭		공유텃밭 전문 활동가 양성	
홀리데이 거창여행		주민주도 관광프로그램 기획 및 진행	

○ 인력현황

직 책	이 름	소 속	비 고
추진단장	김제열	공유농업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사무국장	김경숙	거창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	
사무원	조은겸	거창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	
사무원	박희주	거창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9조

나. 민간위탁(갱신) 추진 계획 : 따로 붙임

다.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위원회 심의 의결서: 따로 붙임

라.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민간위탁 사무 자체평가표 : 따로 붙임

마.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서 : 따로 붙임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전병준)

- 본 동의안은 거창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의 사업기간을 1년 연장함에 따라 민간위탁 기간 또한 1년 연장하고 같은 수탁기관에 재계약하기 위한 것으로 민간위탁 사무처리에 대한 자체평가와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에서 재계약이 적정한 것으로 평가됨.
- 4년간 이루어졌던 사업의 마무리 단계로 사업의 연속성을 고려할 때 재계약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의 근거에 의해 제출된 의안으로 본 동의안의 경우 관련 규정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6. 질의 및 답변 요지 : 회의록 참조

7. 토론요지 : 없음

8. 수정안 요지 : 없음

9. 심사결과 : 원안 가결

10.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1.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